

「2025-2026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」

2026 한중일 미래세대 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 2차공모 Q&A

1 사업의 추진목적과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- ▶ 본 사업은 **한중일 미래세대 예술인이 교류를 통해 국제 협업 기회를**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▶ 이에 따라 ① 한·중·일 차세대 예술인이 실제 교류의 주체로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, ② 교류의 과정과 결과 속에서 협력의 의미와 성과가 어떻게 보여질지, 그리고 ③ 향후 3국 아티스트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.

2 미래세대의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
- ▶ ‘미래세대’ 대상 범위는 교류의 주체로 참여하는 예술인(기획자, 아티스트)을 의미하며, **중국·일본 협력 대상 역시 미래세대 대상**으로 포함합니다. 다만, 모든 참여자가 반드시 미래세대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
* 가능한 사례) 한중일 미래세대 무용단에 중년의 멘토가 참가한 경우,
3국 미래세대 오케스트라 내 중년의 지휘자가 참여한 경우 등
(※ 미래세대: 만 39세 이하, 1987.1.1.이후 출생)

- ▶ 또한,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각 단체(기관)의 대표자, 행정지원 인력, 자문위원 등은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3 미래세대 참여 비중이나 인원수에 대한 의무기준이 있나요?

- ▶ 미래세대 참여 비중이나 인원수에 대해서는 **별도의 제한(최소 인원 또는 비율)은 없습니다.**
- ▶ 다만, 본 사업의 핵심 가치는 ‘**한중일 3국 미래세대의 교류**’입니다. **교류의 주체**로 참여하는 예술인(기획자, 아티스트 등)의 과반수 이상이 미래세대로 구성되는 것을 권장합니다. 즉, 미래세대가 단순참가가 아닌 기획과 협업을 주도하는 실제 주인공으로서, 그 역할이 사업계획서 상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.

4 한국-일본, 한국-중국 간 개별 교류도 3자 교류에 해당되나요?

- ▶ 한국-일본, 한국-중국 간 교류를 별도 사업으로 각각 추진하는 경우에는 3자 교류가 아닌 양자 교류로 간주됩니다.
- ▶ 한중일 3자 교류는 한중일 3국 참여자가 본 사업을 위해 함께 교류·협업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.

5 해외 인사(기획자, 아티스트 등) 초청 조건이 있나요?

- ▶ 단순 행사 참석을 위한 초청은 불가합니다.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공동 제작, 협연, 워크숍 등 협업·교류 과정에 실제로 참여해야 합니다.
- ▶ 단, 해외 아티스트가 본 사업의 협업·교류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, 본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페스티벌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
6 개인 아티스트도 사업에 지원 가능한가요?

- ▶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

7 심사교류와 양자교류 유형별로 선정 건수가 지정되어 있나요?

- ▶ 유형별 사업 선정 건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
- ▶ 사업 심사 시 교류 유형에 따른 별도의 우대사항이나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으며, 공고문에 명시된 심사 기준에 기반하여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최종 선정합니다.

8 12월 2주에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?

- ▶ 사업 추진 기간은 **협약 체결일부터 11월 30일까지**이며, 최종평가는 12월 1주, 사업정산·마감은 12월 1~2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.
- ▶ 최종평가 및 사업 정산·마감 기한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합니다.

9 사업지역을 국내 또는 해외 한 곳에서만 진행해도 되나요?

- ▶ 네, 가능합니다.
사업 지역은 한 곳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, 국내외 예술가 간 교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
예) 국내에서 진행할 경우 해외 아티스트·단체 초청 필수

10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사례비 편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▶ 사업에 참여하는 **핵심 인력(예술가, 기획자 등)**은 본 사업의 직접적인 '참여 대상'으로 간주하여 전문가 활용비(출연료, 기획료 등) 편성이 가능합니다.
- ▶ 내부 인건비 편성 불가하나(대표자 등) 행정 업무 등에 필요한 지원 인력(코디네이터 등) 활용은 가능합니다. 단, 업무 기간과 역할이 명시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▶ 외부 아티스트 활용비는 참여 형태(출연, 워크숍, 공동창작 등)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아티스트와의 협의, 시장 단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정하시면 됩니다.
- ▶ 해외 아티스트의 경우 국제 활동 경력 및 참여 범위를 고려하여 협의 후 계약하시면 됩니다.